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원중,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이종배,
이효원, 정지웅, 최민규,
최진혁,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중독예방과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은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과제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로,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u>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 ----- ----- ----- ----- ----- <u>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문서 번호

2023101100000024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이희원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10.11.

회신일 : 2023.10.13.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3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 확인결과 기추진 중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 2023년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몰수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연례반복)
- 수행방법 : 사업수행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
- 사업대상 : 기소유예자, **마약류중독** 고위험군 등 서울시민
- 사업내용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 **교육 및 홍보**
 - 중독자 재활 및 재발방지 : 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

향후 기대효과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보호**
- 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사회 구성에 기여
- 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 2023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사업설명서